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8 선고 2019가단225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준, 황진철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0. 26. 접수 제52192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D에 대하여 원고 A는 6,750만 원, 원고 B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4772 사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바, D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4772호로 D을 상대로 하여 부산 기장군 E 투자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D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